

대학발전계획위원회 규정(4-4-4)

제1조(목적) 본 대학교 발전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양대학교 발전계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발전 계획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발전 계획에 따른 제도 및 교육의 개선
3. 발전 계획에 따른 시설 계획의 수립 및 조정
4. 기타 발전계획에 관련된 중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진로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 직무) 위원장은 회무를 감독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관사항을 연구하여 학교발전에 바탕이 되도록 하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적극 시행토록 한다.

제6조(소관사항) 위원회에서는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, 학생지도, 시설계획 등을 소관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본방향
2. 기본교육연구 기구의 편성
3. 기본관리기구 조직의 편성 및 학사제도의 개선
4. 교원수급 계획
5. 교과과정 연구
6. 입시제도의 연구
7. 학생 과외 생활지도 계획
8.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
9. 기타 학내 중요사항의 계획 및 조정의 기능

제7조(소위원회 구성)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교 직원 중에서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